

## 도시형공장 관리규정



## 도시형공장 관리규정

[제정 2011. 06. 30.]  
 [개정 2011. 08. 03.]  
 [개정 2012. 05. 16.]  
 [개정 2013. 03. 29.]  
 [전부개정 2013. 06. 20.]  
 [개정 2019. 10. 01.]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(이하 “법인”라 한다)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산업기술단지”라 함은 「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.
2. “사업시행자”라 함은 「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.
3. “도시형공장”이라 함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.
4. “도시형공장 관리규정”이라 함은 「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5조의5의 규정을 말한다.

**제3조(조성현황)** 법인의 산업기술단지 조성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성면적 : 682,605.4㎡
  - 가. 산업단지 내 : 453,523.4㎡
    - (1)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-1번지 외 43필지
  - 나. 산업단지 외 : 229,082.0㎡
    - (1)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2-1번지 외 11필지
2. 조성도면은 <별표 1>과 같다.

**제4조(설립기간)** 도시형공장 설립기간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

**제5조(설립면적)** 도시형공장 설립면적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산업단지 내 설립면적은 산업시설구역에 한해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5조의4 규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의 50%만 허용
2. 산업단지 외 설립면적은 「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지구단위계획」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의 40%만 허용

**제6조(설립업종)** ① 도시형공장을 설립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의한 창업자의 중소기업 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어야 한다. 다만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이면서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5조의3제1항에 따른 동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이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이어야 한다.(개정 2019. 10. 1.)
2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에 한한다.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설립업종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20(2042만 적용)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3을 적용한다. (개정 2019. 10. 1.)

**제7조(설립절차)**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.

1. 사업시행자와 입주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.
2. 연수구청으로부터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확인을 받아야 한다.
3.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장설립 동의를 받아야 한다.
4. 공장등록 신청절차는 <별표 2>와 같다.

**제8조(기타사항)**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」, 「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」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.

**부칙 (2013. 6. 20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(2019. 10. 1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### 산업기술단지 조성도면

- 산업단지 내 (개정 2019. 10. 1.)



- 산업단지 외



<별표 2>

### 공장등록 신청절차(설립절차)

